

재입학 시행지침

제정 2014.12.08.
4차 개정 2016.01.06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상지대학교 학칙 제14조(재입학)에 의거 재입학 관련 세부처리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지침은 학칙 시행세칙 제33조(제적)에 의거 제적 후 2개 학기(제적학기 포함) 경과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1. 자원퇴학(학칙시행세칙 제33조 1항의 1호 해당자)
2. 일반제적(학칙시행세칙 제33조 1항의 3호 해당자)
3. 학사제적(학칙시행세칙 제33조 1항의 5호 해당자)

② 상지대학교 학칙 제48조(징계) 및 학칙시행세칙 제33조(제적) 1항의 4호에 의거 징계 제적을 받은 경우 재입학을 불허한다.

제3조(제출서류)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입학 원서
2. 재입학 추천서
3. 재입학 서약서

제4조(선발방법 및 허가) ① 재입학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. 단, 교원양성 및 의료관련 학과(전공)의 경우 해당학부(학과, 전공)의 학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허가한다(주간, 야간, 정원 내·외 구분)

② 선발인원 초과 시 다음 각 호에 의거 우선 선발한다.

1. 등록 학기 수 상위자(1순위)
2. 총 이수학점 상위자(2순위)
3. 총 백분율 상위자(3순위)
4. 입학성적 총점 우수자(4순위)

③ 재입학 허가 학년은 학칙에 의거한 학년별 수료학점을 기준으로 적용되 기 이수한 학점 수와 졸업여건을 고려하여 허가 학년 및 학기를 적용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**재수재입학자**는 학칙 시행세칙 제38조(재수)에 의거 본인이 원하는 학년 및 학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단, **조기재입학자**는 각 학년의 수료학점에도 불구하고 졸업여건을 고려하여 상위학년으로 재입학을 적용할 수 있다.

2.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제적된 자인 경우 학기에 상관없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3. 1학년 1학기 중 제적된 자인 경우 동일학기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④ 재입학은 입학 당시의 학부(군), 학과(전공)으로 허가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. 편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편제로 재입학을 허가한다.

2. 재입학 시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종전 모집단위와 학문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3. 재입학 시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주간에서 야간으로 또는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4. 동일 모집단위가 주, 야간 있을 경우에는 교차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5조(재입학자의 학점인정 및 교과이수) ① 재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재학당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.

② 재입학자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재입학하는 학년도의 소속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. 단, 기 이수한 학년도, 학년, 학기는 종전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6조(재입학자의 학사경고) 재입학자의 재학 당시에 받은 학사경고는 유효하다. 다만, 세칙 33조 ①항 5호에 의한 학사경고 횟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재입학자의 등록) ①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(입학금 포함)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, 허가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.

② 8회의 등록을 마치고 재입학한 자는 학기 등록 시 학칙시행세칙 제5조(부분수강과 등록금 납부)를 준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, 입학금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) 이 지침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시행일 : 이 지침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경과조치 : 이 지침 제7호는 2015년 1학기 재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시행일 : 이 지침은 2015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경과조치 : 이 지침은 2015년 2학기 재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① 시행일 : 이 지침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경과조치 : 이 지침은 2016년 1학기 재입학자부터 적용한다.